

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08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24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24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6. 5. 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행정과장 이기동)

가. 개정이유

- 법제처 권고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사회단체에 대한 일방적 책임보험 가입 의무 개정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가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

나) 「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22조

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) 합 의

가) 기획예산담당관: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[기획예산담당관-4798(2026. 4. 1.)호]

나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-개선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1584(2026. 3. 13.)호]

4) 기타사항

- 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584호
 - 예고기간: 2026. 3. 11.~2026. 3. 31.(20일간)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 조문 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7조) 법제처 권고를 반영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에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 표현을 삭제하고, 군수의 재량에 따른 보험 가입으로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* 취지에 부합함.

나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 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표현을 간소화 하고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, 제도 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